



「2024년 경찰공무원시험대비」

경찰학 출제영역별 모의고사 및 해설(6)

| 박용증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경찰 경정 출신의
합격 중심 강의 경
찰학 박용증 교수
의 강의 일정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출제영역 : 경찰행정법

[해설]

- ① (×)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난이도 : 중

[정답] ④

3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 ④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하며, 도검은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출제영역 : 경찰행정법

[해설]

- ① (×)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단순한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이다.

난이도 : 중

[정답] ③

다만,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에 의하여 경찰관은 현장책임자의 판단 없이도 범임의 체포,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 “도검”은 “무기”에 해당한다.

34.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
- ② 경찰관의 ‘제지’는 눈 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③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 ⑤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출제영역 : 경찰행정법

[해설]

난이도 : 상

[정답] ②

- ① (○) 대판 2013도643
② (○) 대판 2016도19417
③ (×)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2도11162)
④ (○) 대판 2012도11162
⑤ (×)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6다6713)

3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범칙자에 해당한다.
- ②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광고’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 ③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감경할 수 있다.
-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에 범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제영역 : 생활안전경찰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④

- ① (×) 18세 미만인 자는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 거짓광고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③ (×)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 ④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제영역 : 수사경찰

난이도 : 중

[해설]

[정답] ④

- ① (○) “스토킹행위” 유형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친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게(에서) 따지기도해(嘲)】

- ② (○) 반드시 서면경고하여야 한다.

- ③ (○) 긴급응급조치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